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
조례안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40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라. 신고체계의 마련, 협력체계의 구축,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8조 ~ 제10조).

4. 관계법령

- 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 등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전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됨.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 -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음

- 안 제5조에서는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금천구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 -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,
 -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한국소비자원의 ‘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’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78,596건 중 어린이 안전 사고는 21,642건으로 27.5%를 차지하고 있음.

[어린이 안전사고 현황]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전체 안전사고 건수	72,013	73,007	70,022	74,000	78,596
어린이 안전사고 건수	24,097	24,971	18,494	15,871	21,642
전년대비 증감률	△6.2	3.6	△25.9	△14.2	36.4
어린이 안전사고 비율*	33.5	34.2	26.4	21.4	27.5

* 전체 안전사고 중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

-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,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행정적·제도적 장치를 통해,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는 시설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29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”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어린이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 - 나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
 - 라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
 - 마.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- 바.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·장소 중 대규모점포, 유원시설, 전문체육시설, 공연장, 박물관 및 미술관
 - 사.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4. “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”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점검·제출·보고, 시행 결과의 제출·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

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신고 및 협조 의무 등)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·식품, 시설·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,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

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, 시간,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